

#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8,788,200	20,963,646
일반회계	596,132,575	17,883,977
특별회계	102,655,625	3,079,669
공기업특별회계	76,129,150	2,283,8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366,389	670,99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762,761	1,612,883
기타특별회계	26,526,475	795,7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38,533	37,1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5,475	24,164
주차장특별회계	4,904,346	147,130
수질개선특별회계	19,578,121	587,34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02,63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 보고한다.